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톤제갈공명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채권 모투자 신탁 삭제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③ (생 략) ④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<u>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</u> 3. (생 략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 1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2. <u><호번 변경></u> (현행과 같음)
채권 모투자 신탁 삭제	제 16 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제 15 조제 1 항제 1 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100%이하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가. (생 략) 나. <u>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투자신탁 [채권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이하로 한다.</u> 다. (생 략)	제 16 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제 15 조제 1 항제 1 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100%이하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가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나. <u><호번 변경></u> (현행과 같음)
-	<신 설>	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</u>